

오픈 API 서비스 이용약관

제정 2025. 02. 20

개정 2025. 04. 14

개정 2025. 07. 10

본 약관은 법률과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 1 조 (목적)

키움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키움증권 오픈 API 홈페이지(openapi.kiwoom.com, 이하 “API 홈페이지”라 한다), 키움증권 홈페이지(kiwoom.com, 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 서비스 및 AI 코딩 어시스턴트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사의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픈 API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내부의 서비스 및 데이터를 표준화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이용 신청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2. “고객”이란 회사 홈페이지 또는 API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 등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오픈 API 서비스 및 AI 코딩 어시스턴트를 이용하는 회사의 계좌를 보유한 자를 의미한다.
3. “가입”이란 홈페이지 또는 API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 서비스 신청 양식에 고객의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오픈 API 서비스 및 AI 코딩 어시스턴트 이용 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고객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고객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5. “AI 코딩 어시스턴트”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6. “대화”란 고객이 AI 코딩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력하는 내용(질의)와 그에 따라 서비스에서 생성된 답변(정보, 코드 등)을 의미한다.

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적용범위)

본 약관은 고객이 회사의 오픈 API 서비스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조회(시세정보조회, 계좌정보조회, 잔고조회, 거래내역조회 등), 매매주문업무 및 AI 코딩 어시스턴트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4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4항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오픈 API 서비스 및 AI 코딩 어시스턴트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오픈 API 서비스 및 AI 코딩 어시스턴트 이용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고객이 오픈 API 서비스 및 AI 코딩 어시스턴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오픈 API 서비스 및 AI 코딩 어시스턴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오픈 API 서비스 및 AI 코딩 어시스턴트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필요한 경우
3. 오픈 API 서비스 및 AI 코딩 어시스턴트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정전,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오픈 API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4항에 의하여 오픈 API 서비스 및 AI 코딩 어시스턴트가 제한 또는 중지될 경우, 회사는 이를 카카오톡 알림톡, 전자우편, SMS 등으로 고객에게 공지한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회사 또는 운영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로 오픈 API 서비스 및 AI 코딩 어시스턴트가 중단되어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 5 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오픈 API 서비스 및 AI 코딩 어시스턴트 이용의 대가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 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에 따른다.

② 고객은 자신의 보안코드(앱키, 시크릿키)가 유출 및 도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제3자에게 대여, 위임, 양도 또는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고객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세 정보를 고객이 직접 사용할 목적의 프로그램 개발 등 개인의 업무에 한하여 이용해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고객은 본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회사가 법령 또는 본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 ⑤ 고객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서비스 신청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⑥ 고객은 AI 코딩 어시스턴트 대화를 통해 해킹이나 불법거래 등 악의적인 질문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 (이용 신청)

- ① 오픈 API 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개설된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가입조건을 충족한 자 중 회사의 오픈 API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약관 동의, 본인인증, 계좌인증 등을 통해 가입하여 오픈 API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 ③ 오픈 API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중 AI 코딩 어시스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API 홈페이지에서 AI 코딩 어시스턴트를 신청해야 한다.

제 7 조 (이용 승인 불허)

-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고객에 대한 오픈 API 서비스 및 AI 코딩 어시스턴트 이용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부 사유, 이의신청 절차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오픈 API 서비스 및 AI 코딩 어시스턴트 이용 신청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제 8 조 (이용 중지)

-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동 고객에 대한 오픈 API 서비스 및 AI 코딩 어시스턴트를 1개월 간 중단하며 중지 사유를 고객에게 카카오톡 알림톡, 전자우편, SM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지 권고가 있는 경우
 2. 비정상적인 데이터 조회에 의한 부하가 발생하는 경우
- ② 고객이 제1항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소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고객의 소명자료가 정당하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오픈 API 서비스 및 AI 코딩 어시스턴트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조 (이용 해지)

-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동 고객에 대한 오픈 API 서비스 및 AI 코딩 어시스턴트를 해지하며 중지 사유를 고객에게 카카오톡 알림톡, 전자우편, SM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해지 권고가 있는 경우
 2. 비정상적인 데이터 조회에 의한 부하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 ② 고객이 제1항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소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의 소명자료가 정당하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오픈 API 서비스 및 AI 코딩 어시스턴트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수수료)

- ① 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부터 회사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 ② 회사는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홈페이지 > 이용가이드 > 수수료/증거금 > 주식)

제 11 조 (API 호출 횟수 제한)

- ① 회사는 원활한 오픈 API 서비스 제공을 위해 API 호출 횟수 제한 정책에 의거하여 고객의 API 요청을 제한한다.
- ② API 호출 횟수 제한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회횟수 초당 5건
 2. 주문횟수 초당 5건
 3. 실시간 조건검색 개수 로그인 1개당 10건

제 12 조 (운영 시간)

오픈 API 서비스 및 AI 코딩 어시스턴트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하며, 서비스 점검시간에는 거래내역이 시스템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잔고 조회 등 일부 조회 사항이 실제와 다르게 조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홈페이지 또는 API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전에 고객에게 공지 및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공지한다.

제 13 조 (대화 호출 횟수 제한)

- ① 회사는 원활한 AI 코딩 어시스턴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화 호출 횟수 제한 정책에 의거하여 고객의 API 요청을 제한한다.
- ② 대화 호출 횟수는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에 게시한다.(포털사이트 > AI 코딩 어시스턴트 > 서비스 소개)
- ③ 대화 호출 횟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본 약관 15조에 따른다.

제 14 조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방법 등)

- ① 회사는 오픈 API 서비스의 내용을 추적, 검사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정보를 10년간 유지, 보존하고 보존기간 경과 시 해당 거래기록을 파기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거래기록을 서면 또는 전산정보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보존한다.
- ③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거래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제 15 조 (약관의 변경)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내용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16 조 (서비스 변경)

회사는 수시로 오픈 API 서비스 및 AI 코딩 어시스턴트의 향상을 위해 오픈 API 서비스 및 AI 코딩 어시스턴트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될 오픈 API 서비스 및 AI 코딩 어시스턴트의 내용 및 제공 일자를 회사 홈페이지 또는 API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전에 고객에게 공지 및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손해배상 및 면책)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 제1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고객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 18 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① 고객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 ③ 고객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9 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규에도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계에 따른다.
- ② 본 약관 외에도 회사와 고객 사이에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8조(회사의 책임)를 제외하고 본 약관의 규정이 우선한다.
- ③ 본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제 20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25. 02. 20 제정〉 본 약관은 202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4. 14 개정〉 본 약관은 202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7. 10 개정〉 본 약관은 2025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